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주기 단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조상훈
	담당부서 (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명순		연락처	044-203-2863
	과장	최원일		이메일	jsh2828@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주기 단축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0의2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19. 3. 20~ 2019. 4. 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됨에 따라 수질 관리 강화를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필요 ○ 한국소비자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관련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7.규제내용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검사 주기는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분기별 1회이나, 7월과 8월에 한해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성수기(7월, 8월) 수질관리 강화를 통해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2.25	0	12.25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 없음		12.25	0	12.8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7.사업자는 <u>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u>하여야 하며, <u>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실시</u>하여야 한다. <신설>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p> <p>가.~마. (생략)</p>	<p>7.사업자는 「<u>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u>」 제3조 본문 및 제4조 제2항의 각호에 따라 <u>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실시</u>하여야 하며, <u>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u>하여야 한다. 다만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p> <p>가.~마. (생략)</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들이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면서 수질관리 강화 필요
- 타 시설에 비해 수질검사 주기가 긴 물놀이형 유원시설(항목별로 1년 또는 분기별 1회) 수질관리에 대한 대내외적인 요구 증가
 -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
 - *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 강화 관련 한국소비자원 제도개선 건의('18.8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9.1월) 및 언론보도 다수
- 물놀이형 유원시설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정부 관리 필요성이 증가
 - * '15년 104개소 → '16년 120개소 → '17년 142개소 → '18년 183개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수질검사 주기 유지
	내용	전 항목 검사 1년에 1회 이상, 일반세균·총 대장균·질산성 질소 등 일부항목은 분기별 1회 이상 검사
규제대안1	대안명	성수기(7월, 8월)에 한해 수질검사주기 단축
	내용	7월과 8월에 전 항목 수질검사 월 1회 이상 실시
규제대안2	대안명	연중 수질검사 주기 단축
	내용	전 항목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15일마다 1회 실시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 절감	수질검사 미실시에 따라 수질관리가 미비한 경우 이용객이 피부병, 눈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유지되

		고 국민들의 불안감 야기
규제대안1	이용객이 집중되는 7,8월에만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를 하면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물놀이형 유원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이용객 집중에도 불구하고 현행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던 업체들의 수질 검사 비용 증가
규제대안2	연중 깨끗한 수질을 유지 가능	업체의 수질검사 비용 부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현재도 대부분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들은 7월과 8월에 수질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관리가 미비한 업체에 적용되는 규정일 것으로 큰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음	반영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현재도 여름에는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개정안을 수용 가능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하계 성수기 동안 수질검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 * 분기별 1회 실시 항목의 경우 9월(3분기) 검사 시 실제 이용객 집중 시의 수질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성수기에 입장객수가 과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물놀이형 유원 시설의 특성 상 물이 있는 공간에 이용객이 밀집되므로 수질 관리 강화의 실익이 있음
 -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성수기에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보여 1안이 적합

3. 규제목표

- 수질검사 주기 단축을 통해 업체들이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여 보다 안전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수질기준은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용객이 집중되는 성수기에도 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하면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목적과 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음
- 검사기관 의뢰 시 1회당 7만원 선으로, 비용면에서 과도하지 않아 수범자의 입장에서 수용성이 높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일몰 설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세계보건기구) 안전한 물놀이환경 지침(Guideliens for safe recreational water environments)에서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물놀이 시설의 수질검사 주기를 항목별로 주1회, 월1회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 한국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기준보다 강한 기준을 제시

* 일반세균수 측정 주 1회, 내열성 대장균군 측정 월 1회, 레지오넬라균 분기별 1회, 녹농균 측정 필요시마다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 '공공 수영장 등의 미국 표준수질기준'에서 투명도(매일), PH(매일), 경도(2주에 1회), 시아누르산(2주에 1회 ~ 월 1회) 등으로 검사 주기 규정

○ 타법사례

-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3, 별표19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시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여 검사하도록 규정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19의2와 같다.
[별표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 강화에 따라 연 1회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검사기관 의뢰비용이 회당 7만원선으로, 준수 용이

○ 규제 차등화 방안

- 해당 없음(중소업체도 이용객 안전을 위해 동일하게 적용필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없음(법령 상 검사주체는 개별 업체)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해당 없음(법령 상 검사주체는 개별 업체)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8년 8월) 한국소비자원,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 강화 제안
- ('18년 11월) 성수기 수질검사 강화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 **업계 수용**
* 참석자 :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김해롯데워터파크 등
- ('19년 1월) 유원산업포럼,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 강화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방향 발표
- ('19년 2월) 유원시설 사업주 교육,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 강화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방향 발표 및 업계 의견청취 → **업계 수용**

2. 향후 평가계획

정책지표	목표치
수질기준 준수율	90%
검사횟수 준수율	90%

- (사후관리계획) ▲검사시기, 검사결과서 게시 등 업체 자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물놀이형 유원시설 전수 점검(5월~)을 통해 수질기준 준수여부 및 수질검사 횟수 준수 등 확인

3. 종합결론

- 성수기(7월, 8월)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수질검사 강화(월 1회 이상 실시)를 통해 업체들이 추가 부담해야할 비용에 비해 매년 여름마다 논란이 되는 국민들의 수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눈병, 피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어 규제 강화의 실익이 있고, 반드시 강화가 필요한 사안임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9	1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2.25		12.2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12.25		12.25
기업순비용		12.25	연간균등순비용	12.8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성수기(7월, 8월)에 한해 수질검사주기 단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활동제목	수질검사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12,258,37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간접편익

(정성)세분류	물놀이형 유원시설
활동제목	수질검사
편익항목	긍정적 이미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질검사가 강화된다는 보도를 통해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안전에 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공
근거설명	○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에 대해 부정적인 외부 지적 및 기사가 보도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임 * ('17년 8월) 한국소비자원,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수질 관리 강화 필요성을 내용으로 보도자료 배포 및 후속 뉴스 기사 보도 ** ('18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주기 단축 등을 내용으로 제도개선 권고 의결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세분류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
활동제목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
편익항목	불안감 해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이용객들의 수질 관련 불안감 해소
근거설명	○ 수질검사 강화라는 정책적 대응을 공표하여 언론이 매년 여름 보도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 관련 비판 기사에 따른 불안감을

	다소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정성)세분류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
활동제목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
편의항목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질환예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오염된 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부병, 눈병 등 각종 질환예방
근거설명	○성수기 수질검사 1회 추가로 질병을 예방하여 절감 가능한 치료비의 정확한 수치는 추산이 어려우나, 관련 언론 보도 로 미루어보아 수질이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어 질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언론보도 사례1) 친인척 11명이 워터파크 이용 후 10명에게 피부병 발생 ** 언론보도 사례2) 어린이가 워터파크 이용 후 피부병, 요로감염, 장염 발생